

#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1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11.
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제안이유

-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관련부처간 협의결과 채택된 개선내용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동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## 주요골자

- 가.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종전 「철도법」 제76조에서 「철도안전법」 제45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여 규정함(안 제18조).
- 나.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종전 「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서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여 규정함(안 제19조).
- 다.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출자법인과 함께 출연법인도 감면토록 규정함(안 제20조).
- 라.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함 (안 제20조의2).
- 마. 시세감면 신청서 및 지방세 감면 결정통지서의 별지서식을 규정함(안 제27조)
- 바. 동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시한을 3년 연장하여 2009.12.31 까지로 규정함(안 부칙제3조)

## 개정 조례안 : 별첨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「철도안전법」 45조
  -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7조
  - 「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10조
- 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  -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  - 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
- 입법예고 : 2006. 11. 9. ~ 2006. 11. 20.(11일간)
- 
- 기타 참고사항
- 
-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(2006.11.01)

# **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「철도법」 제76조”를 “「철도안전법」 제45조”로 한다.

제19조 본문 중 “「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8조”를 “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7조”로 한다.

제20조 본문 중 “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(이하 이조에서 “지방공사 등”이라 한다.)가”를 “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(단체를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지방공사 등”이라 한다.)이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”을 “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”로 한다.

제20조의2를 폐지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별지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2항 중 “그 내용을 신청인”을 “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**부 칙**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③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소관 실·과		세 정 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세정과장 권혁수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세정담당 서근식
	담당자 성명·전화	손석주 (행정 2198)

### [별지 제1호서식]

안산시 시세 감면 신청서					처리기간 7일
성명 (법인명)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기번호)			
주소					
감면내용	세목	연도/기분	당초세액	감면세액	
감면사유	안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○○조				

안산시 시세 감면조례 제○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.

일월년

## 안산시장귀하

구비서류	○ 감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## [별지 제2호서식]

안산시

## 수신자

## 제 목    지방세 감면 통지

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「안산시 시세 감면조례」 제○○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.

二二  
三

안산시장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 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 결재권자(직위/직급) 서명  
협조자(직위/직급) 서명

### 시행 처리과 - 일련번호 (시행 일자)

## 우 주소

전화( ) 전송( )

## 접수 처리과명 - 일련번호 (접수일자) /홈페이지 주소

## /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/공개구분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m<sup>2</sup>(재활용품)) 또는 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)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사진제한토지에 대한 감면) ①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 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<u>철도법 제76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p>	<p>제18조(사진제한토지에 대한 감면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철도안전법</u>」 제45조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9조(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) 「<u>재래 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</u>」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. 1. (생 략) 2. (생 략)</p>	<p>제19조(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) 「<u>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</u>」 제37조 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0조(지방공사등에 관한 감면) 지방공기 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(공단을 포함한다)와 지방자치단체가 <u>출자한 법인</u> 또는 단체(이하 이 조에서 "지방공 사등"이라 한다)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<u>부동산</u>(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 세를 면제하고,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 업소세를 면제한다. 다만, 총 자산중 <u>민간출 자분</u>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 비율에 대 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20조(지방공사등에 관한 감면) ----- ----- ----- <u>출자 또는</u> <u>출연한 법인(단체를 포함하며, 이하 이조에 서 "지방공사 등"이라 한다)이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민간출</u> <u>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 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-----</u></p>

